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건축물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시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으므로,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 검토 시 관련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되었을 경우 해당 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토록 함으로써 폭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3항제2호)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,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,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각 호에서 정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:

다음 각 목의 자

가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

나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

2.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: 다음 각 목의 자

가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

나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3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고압가스사업자

다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9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13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스사업자에 대한 통보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받은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) ①·② (생략)	제21조(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<u>건축물 또는 건 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, 석면 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 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되 는지를 확인하고,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각 호에서 정한----- ----- -----.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5조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 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	1.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 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: 다음 각 목의 자 가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 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나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 인하는 시·도지사, 유역환경

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④·⑤ (생략)	<u>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</u> 2.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: 다음 각 목의 자 가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나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3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고압가스사업자 다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9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13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989